

## p247 추가

### (2) 악의 수익자의 반환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악의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2010.01.28. 2009다24187).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판 2018.04.12. 2017다229536).
- (㉡) 이자의 성질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법정이자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판 2017.03.09. 2016다47478).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p251 교체

- (㉢) 반환청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다시 말해서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대판 2010.01.28. 2009다24187, 24194).

## p264 교체

### 다.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

**사무집행은 피용자의 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대판 2003.12.26. 2003다49542).
- ㉡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대판 1989.02.28. 88다카8682).